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4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서삼석·강득구·김종민

소병훈 · 김동아 · 윤준병

이병진 • 박희승 • 전재수

문대림 • 박수현 의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광고의 제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 1.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2.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3.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5. 동물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6.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7.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9.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

용의 광고

- 10.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동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동물진료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② 동물병원 개설자의 광고에 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동물병원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물진료 등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가 제1항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3. 전광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1. 동물병원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및 소속 수의사의 성명
- 2. 동물병원이 설치 · 운영하는 진료과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 사회가 정한다.

제3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제3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동물병원개설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의2(광고의 제한 등) ① 동
	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지
	<u> 못한다.</u>
	1.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
	<u> 고</u>
	2.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
	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
	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비방하
	는 내용의 광고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동물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
	보를 누락하는 광고
	6.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7.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

- 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

 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9.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0.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동물의 복지 및 건강 증진과 건전한 동물진료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 고
- ② 동물병원 개설자의 광고에 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수의 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물진료 등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가 제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

 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

 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 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

 물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3. 전광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 cation)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및 영 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 1. 동물병원의 명칭·소재지· 전화번호 및 소속 수의사의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략)

제39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신 설>

> 1	
Δ 1	ᅜ
O	O

- 2. 동물병원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가 정한다.

제38조(수수	료)	

- 1.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 으려는 자
- 4.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_	_	/ -1 -11 -1	-1 A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동물병원개설자